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7.3)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10명(변동없음)
- 지방공무원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(안 제3조, 제4조)
-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(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)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 (안 제2조, 제5조)

4. 참고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임
- 총 정원은 1,510명(집행기관 1,482명, 의회사무기구 28명)으로 변동이 없으며
 -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
 - 일반직 78%이상, 기능·고용직 20%아내, 별정·정무직은 2%아내로 하고
 -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
 - 일반직 9급~4급이상, 기능직 10급~6급, 연구·지도직, 별정직 7급~6급으로 구분하여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음
- 기구증설과 관련없는 정원(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 : 현재 1,419명)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